

歐洲共同體(EC)擴大外 農業動向

1993. 5

農 林 水 產 部
農業協力通商官室

— 목 차 —

I . EC 기본통계 및 참고사항	-----	1
II . EC 주요기구	-----	4
1. 구주이사회	-----	4
2. 각료이사회	-----	4
3. 집행위원회	-----	7
4. 구주의회	-----	10
5. 법 원	-----	12
III . EC 발전과정과 업무영역 확대	-----	13
1. EC 발전과정 요약표	-----	13
2. 공동정책과 경제통화동맹(EMU) 추진현황	-----	14
3. 단일시장의 출범	-----	19
4. 구주동맹(European Union) 추진현황	-----	23
5. EC 회원국의 확대	-----	30

IV. EC 공동농업정책 동향	-----	32
1. CAP 연혁 및 기본원칙	-----	32
2. CAP 운용제도	-----	33
3. CAP 운용실제	-----	36
가. 정책결정과정		
나. EC 집행위 농업담당 조직개요		
다. CAP 업무영역		
라. 제도별 적용형태		
4. EC 농업의 문제점	-----	40
5. '92 EC 농업정책관련 주요동향	-----	43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10px 0;">CAP 개혁</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10px 0;">미. EC간 농산물 및 UR 협상관련 협상결과</div>		
6. 최근 갓트/UR 농산물 협상동향	-----	53
V. 한. EC 농업협력 현안	-----	59

I. EC 기본통계('91) 및 참고사항

1. 공식명칭 : 구주공동체(The European Community : EC)

2. 회원국 : 12개국

(EC 창설회원국 - 1958) 벨지움, 독일, 프랑스,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1973년 가입)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1981년 가입) 그리스

(1986년 가입) 스페인, 폴류갈

※ 1990년 독일통일에 따라 구동독지역의 편입

※ 오지리, 노르웨이, 스웨덴, 터키등 가입신청

3. 면적 : 2,368천km²(경지면적 - 1325천km² : 55.9%)

4. 인구 : 345,315천명(농업인구 - 8242천명 : 6.2%)

5. 총 GDP : 5조 3178억불(농업 GDP 비중 : 2.9%)

6. 실업율 : 10.4%, 물가상승율 : 5.5%

7. 대외무역(10억불)

세계총수출액 (A)	세계 농산물 수출액 (B)	E		C	
		수출액 (C)	농산물(D)	수입액 (E)	농산물(F)
2692.6 [*]	323.9 (B/A: 12.0%)	526.1 (C/A: 19.5%)	44.6 (D/C: 8.5%) (D/B: 13.8%)	611.9	70.5 (F/E: 11.5%)

※ EC 역내교역액은 제외

8. 기타 참고사항

가. EC 화폐 : ECU(European Currency Unit : 구주통화 단위)

○ 1ECU ≒ US\$ 1.1-1.2

○ EC 예산, EC 통계등 계산상의 통화단위 및 회원국 중앙은행간의 결제에 사용되기는 하나 실제유통되는 화폐는 아님.

나. EC 예산

1) 세 입

- 각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징수액중 일정비율(1.4%)
- 역외 수입품에 대한 관세징수액
- 역외 수입농산물 및 설탕에 부과되는 가변부과금
- GNP를 기준하여 기여하는 회원국의 분담금

2) 세 출

(단위 : 백만 ECU)

	'89	'90	'91	'92	'93
EC 예산(A)	40917.8	44378.9	53823.1	61096.8	66309.0
농업예산(B)	27296.6	28402.1	34640.5	36128.4	37557.6
(B/A)	(66.5%)	(63.8%)	(64.1%)	(58.6%)	(56.4%)
(Guarantee)	(25872.9)	(26453.6)	(32385.9)	(32934.0)	(34062.0)
(Guidance)	(1352.3)	(1846.5)	(2127.9)	(2895.4)	(3366.0)
GDP중 농업예산 비 중	0.5%	0.56	0.63	0.62	0.62

※ '92., '93년은 예산액 기준

다. EC의 법규형식

- EC 법규는 효력발생 방법에 따라, 규칙(Regulation), 지침(Directive) 및 결정(Decision)으로 구분 제정됨.
 - Regulation : 전회원국 국민에 대해 직접적으로 효력을 미침.
 - Directive : 회원국정부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각 정부는 등 지침시행을 위한 국내법 제정의무를 짐.
 - Decision : 특정정부 및 국민에 대해 직접적인 효력을 가짐.
- 한편, EC의 법규제정권은 이사회와 집행위에게 부여된 바, 법규제정권자에 따라 이사회규칙(Council Regulation), 집행위규칙(Commission Regulation), 이사회결정(Council Decision)등 6개 형식으로 분류됨.

라. EC 주요기구와 소재지

- 1) 집행위원회(Commission) : 본부는 브뤼셀, 통계국등 일부기능은 룩셈부르그에 소재
- 2) 이사회(Council) : 이사회 사무국은 브뤼셀소재, 이사회는 룩셈부르그 및 의장국에서도 개최됨.
- 3) 구주이사회(European Council) : 의장국에서 개최
- 4) 구주의회(European Parliament) : 불란서 스트라스부르그에 소재, 다만, 사무국은 룩셈부르그, 위원회 사무국은 브뤼셀에 있음.
- 5) 법원(Court of Justice) 및 회계검사원 : 룩셈부르그

II. EC 주요기구

1. 구주이사회(European Council) : EC 회원국 정상회담

- EC 회원국 정부수반(불란서는 대통령) 및 외상, EC 집행위 위원장, EC 의회 의장으로 구성되는 최고 정책결정 기구
- 원칙적으로 년 2회(매년 6월과 12월 개최, 필요시 긴급회의) EC 이사회 의장국에서 회의개최, EC 이사회 의장국 정상이 구주이사회 의장직을 맡음.
- 1963년이후 EC 회원국 정상회담은 불규칙적으로 개최되었는 바, 1974.12월 Paris에서 개최된 EC 회원국 정상회담에서 규칙적으로(1년에 2-3회) European Council로서 회합키로 결정
- 구주이사회는 EC 문제전반 및 정치협력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당초 EC 조약상의 기구는 아니었으나, 87.7.1. 발효한 Single European Act 상에 동 기구에 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약상 기구화

2. 각료이사회(Council)

가. 구 성

- 회원국 정부대표(각료) 각 1명씩으로 구성되며, 외상들이 참석하는 일반 각료이사회와 관련 각료(재무상, 농업상, 교통상등)가 참석하는 특별 각료이사회로 구분됨.
- 회원국 명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6개월마다 해당회원국 대표가 의장이됨.

나. 권 한

- 입 법 권
 - 집행위가 제안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는 EC 최고 의결기구
- 예산심의 확정권

- 협정체결권
 - 집행위의 협정체결 교섭개시 승인, 지침 시달 및 최종적인 협정 체결권 보유

다. 의결방식

- 이사회에 부의되기전 각국 전문가로 구성된 Working Party 및 회원국의 브뤼셀 상주대표부 대사회의(COREPER : Comite des Representants Permanents,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에서 사전 회원국간 이견 조정
- 조약규정에 따라 의안별로 만장일치 또는 가중다수결로 결정
 - 가중다수결의 경우, 집행위의 제안에 관해 결정할 때는 회원국 총 투표수 76표중 54표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그외의 경우 54표 이상 및 8개국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

(각국별 투표수)

영국, 불란서, 독일, 이태리	: 각 10표
스페인	: 8표
벨기에, 화란, 그리스, 폴투갈	: 각 5표
덴마크, 아일랜드	: 각 3표
룩셈부르그	: 2표

- 종전의 예를보면, 거의 모든 안건은 사전의견 조정을 통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으나, 회원국간 이견상존시, 의장이 투표에 회부키로 결정 하거나 또는 집행위의 투표회부 요청에 과반수 이상의 회원국이 찬성할 경우 투표를 통해 결정함.

※ 룩셈부르그 타협(Luxembourg Compromise)

- 각료이사회에 다수결에 의한 의결방식과 관련, 불란서(특히 De Gaulle 대통령)의 반대로 1966.1. 룩셈부르그 타협이 발표됨.

- 각 회원국의 극히 중요한 이익(vital interest)에 관계되는 사항의 결정시, 만장일치가 될때까지 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각료이사회에서 만장일치제를 도입하는 결과 초래
- 동 룩셈부루그 타협은 EC의 초국가성에 상당한 타격을 가져왔으며, 특히 EC 집행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결과 초래

마. 보조기관

1) 회원국 상주대표회의(COREPER)

- 1967년 Merger Treaty(기구통합조약) 제14조에 규정
 - 이사회 안건준비 및 이사회에서 부여한 업무수행을 위한 회원국 상주대표부 대사들로 구성
 - COREPER Part 1 : 상주대표부 부대표회의
 - COREPER Part 2 : 상주대표부 대사회의
- 이사회 회부안건중 COREPER 회의에서 이견 없을시, 이사회에서는 토론없이 채택되는 것이 관례

2) 제113조 위원회

- EEC 조약 제113조에 의거, 집행위가 공동체를 대표해 대외통상 및 관세문제의 대외교섭시 집행위를 지원(각 회원국 입장 반영)

3) Working Party

- 전문안건 협의를 위해 회원국의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이사회에 회부되는 안건을 사전 검토

4) 이사회 사무국

- 이사회, COREPER 회의, Working Party 회의준비를 위한 행정업무를 담당
- 사무총장, 법무실 및 7개 총국(Directorate-General)로 구성

3. 집행위원회(Commission)

가. 구 성

- 회원국 합의로 임명된 17명의 위원들로 구성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 2명의 위원
 - 화란, 벨기에, 룩셈부루그, 그리스, 폴투갈 : 1명의 위원
 - 임기 : 4년, 중임 제한없음(구주동맹조약에 의거 임기를 5년으로 연장)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6명(임기 2년, 연임가능)
 - 위원장은 수상급, 부위원장은 부수상급, 위원은 장관급 예우를 함.

※ '93.1 임명된 집행위원 명단 ('94년말 임기)

성 명	출 신 국	담 당 업 무
Jacques Delors	불 란 서	위원장 및 통화문제
Christiane Scrivener	불 란 서	세계 및 소비자 보호
Sir Leon Brittan	영 국	대외경제관계(부위원장)
Bruce Milan	영 국	지역정책
Martin Bangemann	독 일	산업 및 정보통신 (부위원장)
Peter Schmidhuber	독 일	예 산
Antonio Ruberti	이 태 리	과학 및 연구개발 담당
Vanni D'archirafi	이 태 리	단일시장담당
Manuel Marin	스 페 인	개발도상국 원조, 어업 (부위원장)
Abel Matutes Juan	스 페 인	교통 및 에너지
Hans Van den Broek	화 란	대외정치관계
Karel Van Miert	벨 기 에	경쟁정책 (부위원장)
Henning Christophersen	덴 마 크	경제 및 금융문제 (부위원장)

성 명	출 신 국	담 당 업 무
Pardraig Flynn	아일랜드	사회담당
Joao De Deus Rogado Salvador Pinheiro	폴 투 갈	구주의회 및 홍보담당
Ioannis D. Paleokrassas	그 리 스	환 경
Rene Steichen	룩셈부르그	농 업

나. 기능 및 권한

○ 제 안 권

- 이사회가 심의, 결정할 모든 안건을 입안, 제출

○ 법규제정권

- 조약상의 규정 및 이사회 규칙(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에 의거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칙, 지침, 결정 채택

○ 집 행 권

- 공동체조약 및 법규의 시행
- 공동체 기금(Community Fund) 관리 및 예산편성권

○ 대 표 권

- EC 법인격을 대표하고 대외협상시 EC를 대표(제3국 및 국제기구에 EC 대표부 파견)

※ 해외대표부(Delegation of the Commission) 설치현황

- 대표부 : 72, 출장소 : 15, 홍보사무소 : 20

다. 운 영

- 집행위는 합의체로서, 각 집행위원별로 특별담당업무가 있으나, 집행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각 집행위원별이 아닌, 집행위 전체가 책임을 짐.

- 모든 사항은 다수결에 따라 결정
 - 의결정족수 : 10명의 위원 찬성
 - 대부분의 안건은 서명 의결절차를 통해 결정되는 바, 초안 배포후 일정기간내(대개 1주일) 명시적인 수정 또는 반대의사가 없을 경우, 채택된 것으로 간주
- 위원회 행정조직으로 사무구(Secretariat-General) 및 23개 총국(Directorate-General)이 있으며, 법무실, 대변인, 통역실, 통계실 등이 있음.
- 총국현황 및 담당업무
 - DG I : 대외경제문제
 - DG I-A : 대외정치문제
 - DG II : 경제 및 재정문제
 - DG III : 역내시장 및 산업문제
 - DG IV : 경 쟁
 - DG V : 고용, 사회문제 및 교육
 - DG VI : 농 업
 - DG VII : 교 통
 - DG VIII : 개 발
 - DG IX : 인사 및 행정
 - DG X : 정보, 통신 및 문화
 - DG XI : 환경, 소비자보호 및 원자력 안전문제
 - DG XII : 과학, 연구 및 개발
 - DG XIII : 통신, 정보산업 및 개발
 - DG XIV : 어 업
 - DG XV : 금융기관 및 회사업
 - DG XVI : 지역정책

- DG XVII : 에너지
- DG XVIII : 신용 및 투자
- DG XIX : 예산
- DG XX : 재정통계
- DG XXI : 관세동맹 및 간접세
- DG XXIII : 중소기업

4. 구주의회(European Parliament)

가. 연혁

- 1958년부터 각회원국 의회대표로 구성되는 Assembly 운영, 1975년 Rome 정상회담 결정에 따라 1979년 6월에 각회원국별로 직접선거에 의해 의원선출
- 1987.7. 발효한 Single European Act에 의해 기능이 대폭 강화

나. 구성

- 각 회원국에서 직접, 보통선거로 선출한 518명의 의원으로 구성
 - 영국은 소선거구제, 그외 국가는 비례대표제에 의한 선거
 - 임 기 : 5년
- 회원국별 의원수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각 81석
 - 스페인(60), 화란(25), 벨지움, 그리스, 폴류갈(24), 덴마크(16), 아일랜드(15), 룩셈부르크(6)
- 성향별 정치그룹
 - 사회당(180), 기독교민주(121), 보수민주(34), 녹색당(30), 자민당(42), 좌익연합(28), 진보민주(20), 공산당(14), 레인보우그룹(20), 우파(17), 무소속(12)

다. 조 직

- 운영위원회(Bureau) : 의장 1명 및 부의장 12명으로 구성됨.
운영위원회에 제정치그룹의 대표가 추가된 확대 운영위원회가 있음.
- 상임위원회(Committee) : 정치문제위원회(45명), 농업, 어업, 식량위원회(45명), 예산위원회(42명), 법률문제, 시민권위원회(25명), 대회경제관계위원회(25명)등 18개 상임위원회
- 사무국 : 사무총장 및 7개국으로 구성
- 의원친선협회 : 24개 지역별 친선협회가 활동중이며, 아세안 및 대한민국 친선협회가 아국담당

라. 권한 및 기능

- 개별 국가의 의회와는 달리 입법기관이 아닌, 감독 및 자문 기관적 성격
- 감독기관으로서의 권한
 - 집행위 불신임권
 - 질의권 : 집행위, 이사회, EPC
 - 일부예산 확정권 : 예산안 심의 및 수정제안권, 비의무지출 비용에 대한 최종확정권
- 자문기관으로서의 권한
 - 동의권 : 신규회원국 가입등
 - 협의권 : 주요정책 및 협정체결
 - 법안심의권 : 주요 법안심의. 단 역내시장 관련사항은 수정안 제출 권한

마. 의사운영

- 매월 1회씩 1주간(5일) 정기회의를 개최함(8월은 제외)
- 3월 농산품 관계회의, 10월 예산관계회의 각 1회씩 추가 개최
- 본 회의는 불란서 스트라스부르그, 상임위는 브뤼셀에서 개최

- 본회의 의사 정족수는 총의석의 1/3 이상, 상임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상임위 의석의 1/4 이상

5. 법 원(Court of Justice)

- 회원국 합의에 따라 임명된 13명의 법관(judge)과 6명의 심의관(advocate-general)로 구성
 - 법관은 회원국 각 1명, 5대국이 순번제로 1명씩 추가 임명하며, 임기는 6년
- 법관중에서 호선에 의해 1명을 법원장으로 선출(임기 3년)
- 공동체 조약 및 각종 EC 법규에 관한 해석 및 이와 관련한 회원국간, 공동체 기구와 회원국간 또는 공동체기구와 개인(법인포함)간의 분쟁에 대한 최종적인 법률적 판단권 행사
 - EC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이며, 공동체기관, 각회원국 정부 및 개인에게 직접 효력이 있음.
- EC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이며, 공동체기관, 각 회원국 정부 및 개인에게 직접 효력이 있음.
- EC 법원의 업무량 증가와 관련, Single European Act 규정에 따라 1심 재판소를 EC 법원의 하급심으로 설치함('88.10)

Ⅲ. EC 발전과정과 업무영역 확대

1. EC 발전과정 요약표

단계별	근기 확보	업무영역	추진체
EC 태동 및 공동정책 추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8 ECSC 결성 (파리조약) - '58.1 EEC 및 EURATOM 결성(로마조약) - '67.7 EC 단일이사회 및 집행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EC 조약상 공동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및 통상정책 ('68.7 관세동맹 완성) - 농업정책('58-'62) - 운수정책 - 경쟁정책 ○ EMS(European Monetary System) 발족('79.3) 	EC 집행위 및 이사회
단일시장 발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5.6 단일시장 추진 백서(EC 집행위 발표) - '87.7 구주단일의정서 발효(Single European Act) - '93.1 EC 단일시장 발족 	(구주단일의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C 단일시장 추진 명문화 ○ 공동정책 범위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및 통화정책 - 사회정책 - 지역개발정책 - 과학기술정책 - 환경정책 	EC 집행위 및 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간 정치협력을 명문화 - EPC(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 설치 	EPC 사무국
구주동맹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12 구주동맹 (European Union) 조약안 합의 - Maaschtricht 조약 ○ '92.2 구주동맹 조약서 서명 ○ 회원국 비준추진중 	(구주동맹조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통화동맹 추진 (기존 EEC 조약 수정) ○ 공동외교안보정책 추진 ○ 사법내무협력 추진 	EC 집행위 및 이사회 EPC

2. 공동정책과 경제통화동맹(EMU) 추진현황

가. EC 공동정책

- EEC 조약에 규정된 EC의 목표는 상품, 노동, 자본의 자유이동을 확보하고, 공동관세·무역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공동시장(Common Market)을 형성함에 두고 있음.
- 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C는 3차에 걸쳐 관련 기본조약(EEC 조약, Single European Act, Maarschtricht 조약)의 체결을 추진한 바 있고, 공동시장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93.1월을 기해 단일시장(Single Market)을 발족시킨 바 있음.
- 현재까지 추진 또는 추진중인 공동정책은 아래와 같음.

(EEC 조약)

- 공공관세 및 대외통상정책
- 공동농업정책
- 공동운수정책
- 경쟁정책
- 회원국 경제정책의 조화등

(Single European Act)

- 경제 및 통화정책
- 사회정책
- 지역개발정책
- 과학기술개발정책
- 환경정책

(Maaschricht 조약 - 회원국의 비준 추진중)

- 경제통화동맹(EMU) 결성 추진
- 동맹시민권 제도 도입
- EC의 관할권을 산업, 교육, 범유럽 통신망, 보건, 문화, 소비자 보호까지 확대
- 최저임금, 노동조합등 공동노동정책 수립에 대한 EC 권한 확대

나. 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 추진

1) 추진배경 및 경위

- 회원국 통화간 환율안정을 위해 79.3. 설치한 유럽 통화제도(EMS)의 성공적 운영
 - 회원국 통화의 평가기준이 되는 통화단위 ECU의 창출
 - 환율조정장치(ERM)를 설치, ECU를 기준으로 회원국 통화의 환율을 일정범위(상하 2.25% 또는 6%)내에서만 변동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동 범위를 벗어날 경우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개입하여 환율안정 도모
 - 시행초기에는 매년 기준환율을 조정하였으나, 87년 이후 마스트리히트조약 합의당시까지 기준환율 조정없이 성공적으로 운영
- 단일시장 완성과 병행하여 회원국간 경제.통화정책의 조정 필요성 증대
- 90.7월 제1단계 EMU(모든 회원국 통화의 ERM 가입등) 시행 및 91.12월 Maastricht 정상회담에서 제2단계 EMU(유럽통화기구 설치등) 및 제3단계 EMU(단일통화창출 등) 계획 합의

2) 경제·통화동맹(EMU)의 주요내용

(1) 통화동맹(Monetary Union)

- 단일통화의 창출
 - ECU를 제3단계에서 도입될 EC 단일통화로서 합의
- 유럽중앙은행의 설립
 - 물가안정에 최우선 정책목표를 두고, 물가안정 바탕위에 일반경제정책 목표지원
 - 회원국 정부 또는 EC 기구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 회원국 발권력의 집중 및 공개시장조작, 재할인정책등 모든 대내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
- 유럽중앙은행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국에 대한 잠정조치
 - 유럽중앙은행내에 EC 회원국 중앙은행총재로 구성되는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설립
 - 일반이사회는 ECU와 제3단계 EMU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국 통화간의 환율 결정 및 통화정책의 조정기능을 담당

(2) 경제동맹(Economic Union)

- 주요 경제정책의 조화
 - 중기경제정책 목표 및 기준설정
 - 다자간 감시(Multilateral Surveillance) 기능의 강화
 - 재무이사회는 각 회원국 경제정책의 동 중기경제정책 기준 부합여부를 심사, 필요시 시정조치 권고
- 재정적자에 대한 통제강화
 - 재정적자의 과다판단 기준 : 당해년도 적자가 GDP의 3%, 공공채무누계가 GDP의 60% 초과 경우

- 재정적자 보전방법의 제한 : 화폐발행에 의한 재정적자 보전금지 (No Monetary Financing), 적자 발생국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금지 (No Bailing-Out)
- 재정적자 기준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권고→공개권고→구주투자은행(EIB) 자금지원 중단→유럽중앙은행에 무이자 예치 의무부과 또는 벌금 부과

○ 특별재정 지원계획의 신설

- 회원국간 경제조화를 위해 EC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특정회원국에서 심각한 경제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원
- 엄격한 의무사항을 부여하여 EC 예산 또는 구주투자은행(EIB) 등에서 지원

3) EMU 추진방안 및 일정

○ 90.7월 제1단계 EMU 시행

- 모든 회원국 통화의 ERM가입(현재 희랍 미가입 및 영국, 이태리 탈퇴)
- 주요 경제정책(재정적자, 물가, 금리등)의 조정강화를 위해 다자간 감시제도(Multilateral Surveillance) 시행

○ 94.1월부터 제2단계 EMU로의 이행

- 과도적으로 유럽통화기구(European Monetary Institute)를 설립, 유럽중앙은행 설립 준비

○ 96년말까지 EC 집행위와 유럽통화기구는 각 회원국별 경제의 조화상태를 재무이사회에 보고

- 재무이사회는 회원국별 경제의 조화상태를 평가, 최종단계 EMU로의 이행 가능 회원국을 EC 정상회담에 권고
- EC 정상회담에서는 7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하기 "경제의 조화" (economic convergence) 기준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가중다수결로 제3단계 EMU로의 이행여부 및 이행시기를 결정
 - 인플레이율이 가장 낮은 3개 회원국의 평균과 1.5% 이내
 - 당해년도 재정적자가 GDP의 3%, 재정적자 누계가 GDP의 60%이내
 - 장기 이자율이 가장 낮은 3개 회원국 평균과 2% 이내
 - 최소한 2년동안 기준환율 평가절하 불실시
- 97년말까지 제3단계로의 이행시기를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99.1월 부터 경제의 조화기준을 충족하는 회원국에 한하여 자동적으로 제3단계로 이행함.
 - 다만, 영국 및 덴마크에 대하여는 "예외(opt out)"를 허용

(참고) EC 회원국 경제조화 지표

(91.12월 현재)

국 명	물 가 상승율 (%)	장기금리 (%)	재정적자(GDP 대비)		평가절하 실시여부 (2년내)	기 준 충족수
			1년 (%)	누적 (%)		
프 랑 스	2.5	8.8	-1.5	47	0	5
독셈부르그	2.4	8.1	+2.0	7	0	5
덴 마 크	1.8	8.8	-1.7	67	0	4
영 국	3.7	9.7	-1.9	44	x	4
독 일	4.1	8.1	-3.6	46	0	3
벨 지 움	2.8	8.9	-6.4	129	0	3
아일랜드	3.5	9.3	-4.1	103	0	3

국명	물가 상승율 (%)	장기금리 (%)	재정적자 (GDP 대비)		평가절하 실시 여부 (2년내)	기준 충족수
			1년 (%)	누적 (%)		
네델란드	4.8	8.6	-4.4	78	0	2
이태리	6.2	12.6	-9.9	101	0	1
스페인	5.5	11.7	-3.9	46	X	1
希臘	17.6	20.8	-17.9	96	X	0
폴란드	9.8	14.1	-5.4	65	X	0
기준지표	3.7	10.3	3.0	60	± 2.25	
기준 충족 국가 수	6	8	4	5	8	

3. 단일시장 (Single Market)의 출범

가. 단일시장의 출범

- '93.1.1을 기해 EC는 단일시장의 출범을 공식선언함으로써 상품, 사람, 자본 및 서비스의 역내 자유이동이 보장되는 단일시장이 발족함.
- '93.3월말 현재, 단일시장 관련한 입법사항 282개중 262개(93%)의 법률제정이 완료되었고, 회원국의 국내입법조치는 83%가 완료된 상태이며, 이사회 계류중인 안건 및 국내입법조치가 미완료된 사항에 대한 조치는 계속됨.
 - 입법추진 부진분야 : 동식물검역, 지적재산권, 회사법,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조화

나. 추진배경 및 경위

1) 추진배경

- 경제통합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
 - 관세동맹, 공동정책 시행, 유럽통화제도(EMS) 실시등
- 70년대 이후 EC 경제침체에 새로운 활력부여 필요
 - 1-2차 석유파동 이후 EC 경제상태 악화
- 미·일등 경쟁국 대비 기술수준의 낙후
 - EC 기업의 소규모, 투자저조 및 정부의 과보호가 원인
- EC 역내 교역비중의 지속적 증대

연도	65년	80년	87년	90년	91년
구성비	43%	48%	59%	60%	61%

- 궁극적인 구주동맹(European Union) 지향

2) 경 위

- 82.12월 코펜하겐 정상회담이래 단일시장 추진필요성 논의
- 85.6월 EC 집행위, 단일시장 추진을 위한 백서(White Paper) 완성
- 86.2월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완성(87.7월 동 조약발효)
 - 단일시장 추진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다. 단일시장의 주요내용

1) 역내상품 및 사람의 이동제한 철폐(물리적 장벽)

- 상품이동 통제
 - 역내 일반상품이동시 통관절차 철폐
 - 동식물 검역제도의 조화(공동규정 제정 또는 도착국정부의 규정 적용)로 동식물 이동시 국경검사 철폐

- 다만, 군사목적상 민감품목, 방사능물질, 여행자 동반 동물등의 통제분야는 미완료

○ 사람에 대한 통제

- 육로이동자에 대한 여권심사철폐, 다만, 치안, 마약밀수 방지 목적상 여권심사는 허용
 - 육로국경초소의 철거
- 공항 및 항구에서의 여권심사 철폐('93년말 - 역내와 역외여행자 구분사열대 설치목적)
 - 역내 공항출발 승객에 대한 세관검사, 휴대물품 면세허용 제도도 철폐
-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는 여권심사 필요성을 주장
- 여타 9개국은 육상, 해상('93.7) 및 공항('94.1) 통제의 철폐를 목표로 한 쉐겐협정을 추진중

○ 공동역외국경설치 문제

- 마약, 테러, 불법이민 방지를 위해 제3국 상품 및 제3국인에 대한 공동비자, 공동동식물 검역, 민감품목 교역에 대한 공동통제 규정 시행을 추진중

○ 정치망명자에 대한 공동정책

- '90.6월 서명된 더블린협약(회원국별 비준 추진중)의 발효시 정치망명자에 대한 공동정책을 시행 예정

2) 회원국간의 상이한 정책 및 제도의 철폐(기술적 장벽)

○ 공동표준 및 규격제정 : 구주공동 표준규격 설정

- 자동차등 공산품의 경우, EC 또는 회원국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자유이동 보장
- 건강, 환경등 소비자 보호필요 품목에 대한 제조요건을 공동화하며 동 요건 부합시 CE 마크 부여한 후 역내 자유이동을 보장

- 공공구매시장의 상호 개방
 - 에너지, 수송, 통신, 상수도 사업분야에 대한 공공시장 개방
(공공물품 및 건설사업시장은 기개방)
- 근로자의 자유이동
 - 봉급근로자의 자유이동 및 사회보장 적용
 - 의사, 변호사등 자유업 근로자의 자격증 상호인정 제도 추진중
 - 학생, 연금생활장등의 거주권 허용문제는 회원국간 이견
- 서비스시장 개방
 - 은행업 : 단일면허제, 모점국 감독원칙 및 설립요건의 공동기준
제정
 - 증권업 : 금융재벌감독 및 투자자 보호관련 지침 검토중
 - 보험업 : 단일면허제, 모점국 감독원칙에 대해 합의(국내입법
추진중)
 - 운송업 : 역내 항공운입의 자유경쟁, 항공사등 종사자들에 대한
면허기준의 통일, 트럭육상운송 쿼타 제한 철폐등
 - 방 송 : TV 방공프로그램 시장의 상호개방, 다만, 위성 TV 및
케이블 TV 방영문제는 계류중
 - 자본이동의 자유화 : 타회원국에서의 개인구좌 개설 허용등
외환관리 규정상의 규제 철폐
 - 회 사 법 : 유럽회사법(회사설립의 자유화) 제정 추진중
 - 법인세 : 자회사가 모점에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과세
면제제도 도입, 그러나, 법인세율, 과세표준등 법인
세제의 조화문제는 검토중
 - 지적재산권 : EC 특허조약(75년)의 비준, EC 상표규정, 의장등록
제도 및 저작권 보호기간의 조화방안 추진중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제도의 조화문제등 일부
사항은 기실시

3) 간접세제 조화로 상품의 자유이동 보장(재정적 장벽)

- 부가가치세
 - 회원국별로 다양한 부가가치세율의 구조를 표준세율(15%)과 저세율(5%)로 단순화하여 실시
- 소비세
 - 물품별 최저세율을 설정(담배 : 갑당 0.3ECU, 휘발유 : 리터당 0.34ECU등)

4. 구주동맹(European Union)

가. 추진배경 및 경위

1)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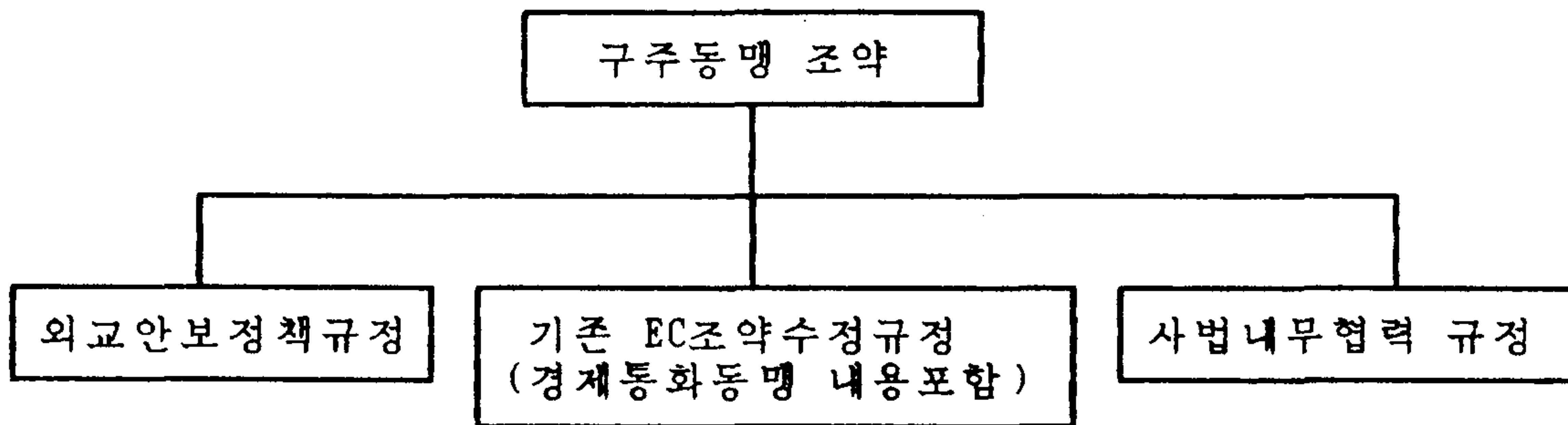
- 경제통합성과를 기초로한 정치통합으로의 발전 추진
 - 경제적 통합과 정치적 통합간 불가분성
- EC 단일시장 완성효과제고 및 회원국간 경제통화정책의 조화 필요성
- 독일 통일 실현에 대한 대응
 - 통일독일을 EC에 보다 기속시켜 독자세력권 형성배제
- EC 대외정책의 통일성 및 일관성 확보필요성 대두
 - 걸프사태시 EC 회원국간 상호정책 조정미비 및 미온적 대처 반성
- EC의 대외적 위상제고 필요성 인식
 - 냉전체제의 종식에 따른 EC 중심의 신유럽질서 구축분위기 고조
- EC기구의 민주적 통제결여 보완필요성
 - EC 입법과정에서 구주의회의 영향력 미미

2) 경 위

- 90.12월 로마조약 개정을 위한 정부간 회의 정식 발족
- 91.1-12월 정부간 회의 개최
- 91.12월 Maastricht 정상회담에서 구주동맹조약안 합의
- 92.2월 구주동맹조약 서명

나. 구주동맹조약 구조

1) 3주체제(Three-Pillar Structure)



2) 각 Pillar별 차이점

- 기존 EC조약 수정규정(First Pillar)
 - EC의 표준적 정책결정 절차 유지(구주의회 통제권, 집행위제안권등)
 - 구주사법재판소의 관할권 인정
- 외교안보정책규정(Second Pillar)
 - 구주정치협력(EPC) 차원의 정부간 협력이 공동정책으로 발전
 - EC의 표준적 정책결정 절차와 상이(주로 회원국정부가 정책제안, 구주의회의 통제권 미약)
 - 구주사법재판소의 관할권 배제
- 내무·사법협력규정(Third Pillar)
 - 정부간 협력 단계
 - 구주사법재판소의 관할권 배제

다. 구주동맹조약 주요내용

1) 기존 EC 조약에 대한 수정 규정(First Pillar)

- EMU 관련내용 (Ⅲ-2항 참조)
 - 단일통화 창출
 - 유럽중앙은행 설립
 - 주요경제정책의 조화
 - 재정적자에 대한 통제강화
- 동맹시민권 제도 도입
 - 회원국 국민에 대해 국적에 관계없이 거주지의 지방선거 및 구주의회선거 참여권(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
 - 자국 공관이 없는 제3국에서 회원국 공관에 대한 보호요청권 부여
- 구주의회 권한확대(EC의 민주적 통제 결여문제 보완)
 - 단일시장 관련조치, 장기연구개발계획, 소비자 보호등 특정분야에 관한 EC 법규 제정시 구주의회에 최종거부권(final veto) 부여
 - 구주시민권 정책, 구주의원 단일선거 절차등에 대해 구주의회의 동의권한 확대
- 공동체 관할권 확대
 - 산업, 교육, Trans-European Networks, 보건, 문화, 소비자 보호 등으로 관할권 확대
- 공동체의 효율성 증대
 - 이사회 결정시 가중다수결 방식 확대
 - 구주사법재판소가 확정한 결정사항의 불이행시 벌과금 부과
- 공동체 기구변경
 - 집행위원회와 구주의원 숫자조정을 92년말까지 검토(국별 구주의원 숫자조정 기완료)

- 집행위원 임기를 95.1월부터 구주의원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
 - 회원국 지방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지역위원회(Committee of the Regions) 신설
 - 경제·사회적 결속(Economic and Social Cohesion)
 - EC내 후진국 지원을 위한 "결속기금(Cohesion Fund) 설치(환경정책, 교통채신망 확대등 지원)
 - 사회정책
 - 영국을 제외한 11개 회원국간 별도 의정서(Protocol) 채택
 -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 남녀 동등대우, 근로자 사회보장, 제3국민 고용조건, 고용증진 정책등 공동사회정책 수립 추진 (임금, 결사권, 파업권, lock out 등은 제외)
- 2) 공동외교안보정책(Second Pillar)
- 외교·안보정책의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공동정책의 수립 및 시행
 - 구주이사회(정상회담)가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위한 원칙 및 방향 수립
 - 동 구주이사회가 정한 방향에 의거, 각료이사회가 공동 외교안보 정책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만장일치로 결정
 - 만장일치를 통해 가중다수결로 결정할 사항 선정 가능
 - 구주동맹의 방위기구로서 서유럽동맹(WEU)의 단계적 발전추진
 - WEU는 방위동맹 발전과정의 일부 형성
 - 구주동맹은 방위문제의 결정 및 조치를 WEU에 대해 이행토록 요청
 - 구주동맹의 안보정책은 NATO의 공동안보 및 방위정책과 양립의무
- 3) 사법·내무협력(Third Pillar)
- 정치적 난민, 역외국경통과, 이민정책, 마약퇴치, 세관협력, 테러등 국제범죄방지 및 경찰협력(Europol 설치)등 사법·내무분야에서의 협력 추진

- 회원국간 상호 관련조치 조정을 위한 정보교환 및 협의, 필요시 공동입장, 공동조치 채택 및 관련 협약안 수립

라. 평가 및 전망

1) 평가

- EC가 단순한 경제공동체로부터 단일정치·경제 동맹체로 발전하는 기반 확보
- 미국등과 함께 신국제질서의 중심세력으로 부상
- 2차대전후 NATO를 통한 미국 주도의 구주안보질서 재편 계기 마련
 - 공동안보정책 도입으로 구주안보 문제에 있어 유럽의 독자성 제고
- 단일시장 완성, 단일통화 채택시 세계 최대의 통상·금융권으로 부상
전망

2) 비준동향 및 전망

(비준 동향)

- 아일랜드(6.18 국민투표), 룩셈부르크(7.2 의회), 그리스(7.31 의회), 불란서(9.20 국민투표), 이태리(10.29 의회), 벨기에(11.4 의회), 스페인(11.25 의회), 폴투갈(12.10 의회), 화란(12.16 의회), 독일(12.18 의회)등 10개국 비준완료
- 덴마크는 92.6.2 국민투표에서 부결하였으나, 92.12월 에딘버러개최 EC 정상회담에서 해결방안(방위정책, 단일통화 참여등에서의 예외 허용)에 합의함에 따라 93.5.18 제2차 국민투표 실시 예정
- 영국은 92.11.4 하원에서 조약비준을 위한 심의 공동안을 319:316으로 가결한 후, 의회표결은 93년중 덴마크의 국민투표가 재실시된 후 실시키로 발표

(비준 전망)

- 93년중 비준완료 및 발효 전망
 - 에딘버러 정상회담에서 덴마크 문제에 대해 어렵게 해결(일부 회원국, 필요시 비준완료 회원국만으로서의 통합추진의사 표명)

- 따라서 동 정상회담 이후 덴마크 국민 여론조사 결과 찬성율이 감소 (반대율 불변)하고는 있으나 덴마크로서는 재차 비준 부결이 EC와의 결별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준할 것으로 예상
- 영국도 현재 노동당이 국내정치 목적상 계속 지연책을 전개하고 있어 비준여부가 다소 불투명하긴 하나, 덴마크 비준시 결국 비준할 것으로 전망
- EC 집행위는 동 조약의 년내 발효를 전제로 대외 정치관계총국 신설을 포함한 기구개편등 준비작업을 이미 본격 추진중

3) 문제점(통합의 장애요인)

가) 회원국간 경제조화 추진의 현실적 제약

-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지속
 - 90년 하반기 이래 경기침체 지속, EC 회원국의 평균 실업율이 10%를 초과하여 심각한 정치, 사회문제 초래
- 최근 유럽 환시장 위기등 EMS 체제의 불안정 노정
 - 92.9 EC 외환위기에 따른 영국 파운드화와 이태리 리라화의 ERM 탈퇴이후, EMS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
 - EMS의 불안정한 상태는 늦어도 99년도까지 EC 단일통화를 창출 하려는 EMU 추진계획의 불확실성 더욱 가중
- 단일통화 도입기준에 맞는 국가가 현재 2개국(불란서, 룩셈부르크)에 불과

나) 구주통합 추진에 대한 일반시민의 불안 및 거부감

- 독일등 강대국의 영향력 확대가능성에 대한 소국의 거부감
- EC 집행위 권한강화로 인한 관료주의 확대에 대한 불만 점증

다) 공동외교 안보정책 추진의 실효성

- 사실상의 만장일치 결정 방식으로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실효성 여부 불투명

라) 통일독일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주요회원국간 마찰 가능성

- 이자율 문제 및 유고사태 초기대처 과정등에서 나타난 독일의 독주에 대한 여타 회원국들의 우려

마) EC의 회원국 확대에 따른 역내 결속강화 가능성

- 오지리, 스웨덴, 핀란드(93.2.1) 및 노르웨이(93.4.5)와 가입교섭 공식개시

4) 통합 추진 전망

가) EC 통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정

- EC 회원국의 통합의존도 심화(역내무역 계속 증대등)
- 93.1.1 단일시장 공식출범 및 동 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통합 심화 불가피
- 통합을 통한 세계정치 및 경제적 역할증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나) 기능주의적 접근 방법을 통한 통합과정 지속 전망

- 가능한 분야부터 통합을 먼저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분야 통합계속 확대
- 구주동맹조약의 년내 비준으로 EMU 추진 및 공동외교안보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예상
-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라 EMU 추진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나, 통합 기본방향은 유지 전망

다) EC 확대를 통한 거대 유럽 형성 전망

- 스위스를 제외한 EFTA 6개국과의 EEA 조약의 93년중 발효시 EC 단일시장의 동 6개국으로의 확대
- 핀란드, 오지리, 스웨덴, 노르웨이의 95년 EC 가입 전망
- 전 유럽이 EC 경제권에 사실상 편입과정
 - 구유고를 제외한 모든 중·동구국가와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 또는 경제 통상협력 협정을 이미 체결
 - 또한 러시아등 CIS 국가와 자유무역지역 설치를 목표로 하는 내용의 기본협력협정 체결 추진중

5. EC 회원국의 확대

가. 유럽경제지역(EEA) 설립추진

- 1973년 이래 EC-EFTA간 자유무역협정 유지
 - 모든 공산품의 관세 및 수량규제 철폐
 - ※ EFTA 회원국(7개국) :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오지리,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EC와 EFTA 국가간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설립추진
 - 92.5월 EEA 설립조약 서명
 - 양 블럭간 상품, 사람, 자본, 서비스 자유이동 보장을 통한 광역 유럽 경제권 설립목적
 - 93.1월 발효 목표였으나, 스위스의 국민투표 부결로 다소 지연 되었으며 스위스를 제외한 18개국으로 93년중 발효 예상
- EFTA 제국과의 교역의 총 EC 교역중 비중(91년) : 23.9%

나. 회원국 확대

- EC 통합가속화에 따라 EC 가입희망국가 증대
 - 터키(87.4월), 오지리(89.7월), 사이프러스(90.7월), 몰타(90.7월), 스웨덴(91.7월), 핀란드(92.3월), 스위스(92.5월), 노르웨이(92.11월) 등 8개국 정식가입 신청
- 오지리, 스웨덴, 핀란드(93.2.1) 및 노르웨이(93.4.5)와 95년 가입 실현 목표로 공식 교섭 개시
- 스위스는 EEA 조약의 국민투표 부결로 가입교섭 개시여부가 불투명
- 동구제국, 몰타, 사이프러스, 터키등은 정치.경제적 난점으로 인해 조기 가입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나, EC는 동 국가들과의 정치.경제적 협력 증대노력 지속 전망

IV. EC 공동농업정책 동향

1. CAP(Common Agricultural Policy) 연혁 및 기본원칙

가. EC의 공동농업정책은 1957.3 체결한 Rome(EEC)조약에 근거(제38~46조)

하고 있으며, 동 조약 제39조에 제시된 목표는 아래와 같음.

- 기술향상과 농업분야의 합리적 개발 및 생산요소의 최적이용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 농민의 소득향상등 적절한 농촌생활 수준을 확보
- 농산물 시장의 안정도모
-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과 적절한 소비자 가격유지

나. 발전과정

- CAP 기본원칙 설정 : 1957.3. Rome 조약
- CAP 운용조직 설정 : 1958.7. Stresa Conference
- EAGGF 설치 : 1962.4. 농업이사회 결정
- 농업구조개선 시행 : 1979~1986중 유통구조, 지역개발사업 추진
- 제1차 CAP 개혁 : 1988.2. 과잉생산 및 재정부담 억제방안
- 제2차 CAP 개혁 : 1992.5. 과잉생산 완화를 위한 지지가격 인하

다. 기본운용원칙

(1) 단일시장(Single Market)

- EC 회원국간의 관세, 보조금, 교역제한을 철폐하여 농산물 이동의 자유화 확보
- 공동가격(Common Prices), 공동품질기준 적용
- 행정적, 동.식물 검역적 측면에서의 차별폐지
- 회원국간의 환율안정을 위한 제도 마련(MCAs : Monetary Compensatory Amounts 설치-'62)

(2) EC 생산물 우선원칙 (Community Prefer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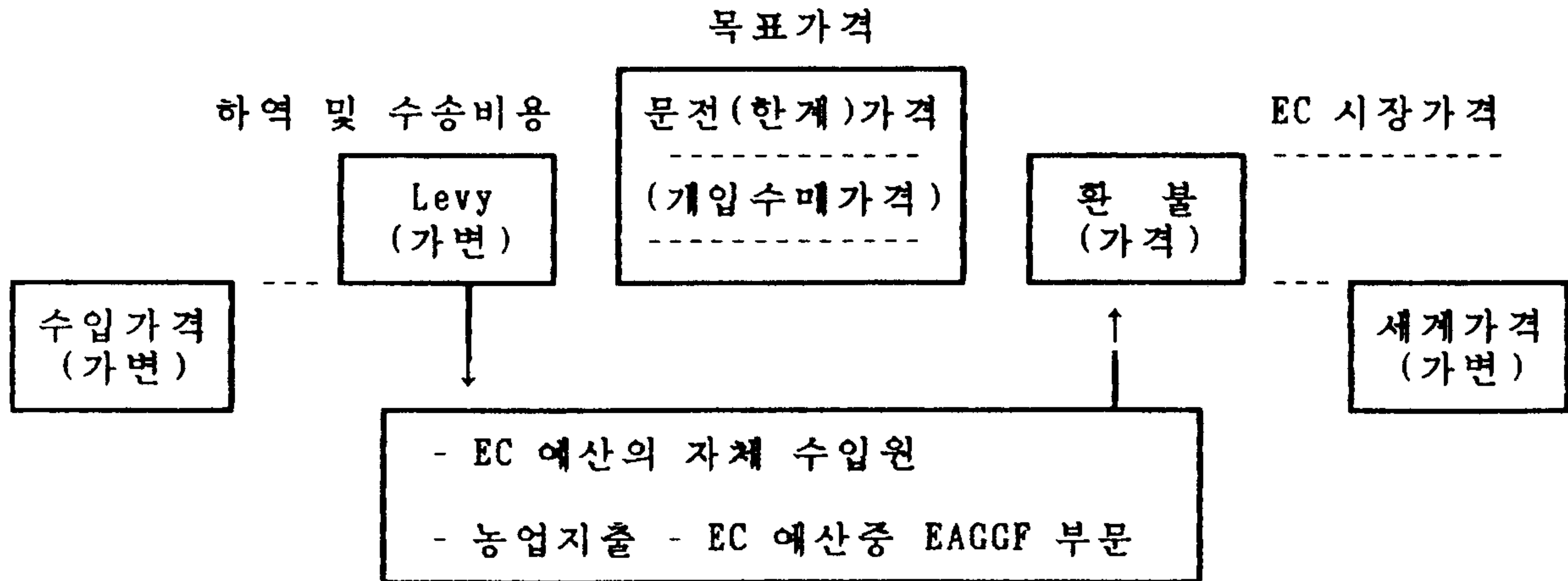
- 역내생산된 농산물의 판로확보 (Intervention Price, Export Refund 등)
- 저렴한 국제농산물 유입 또는 국제농산물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EC 농업과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방지 (Variable Levies)

(3) 공동재정부담 (Common Financial Responsibility)

-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 (EAGGF : 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 설치 운용
- EAGGF는 별도기금이 아니라 EC 예산의 일부
- EAGGF는 보장부문 (Guarantee Sector)과 지도부문 (Guidance Sector)으로 구분

2. CAP 운용제도

가. 운용 체계도



나. 가격 및 생산보조

(1) 주요 제도가격의 개념

- 목표가격(Target Price)
 - 농민수취 목표 또는 가격안정대의 상한가격이며, 역내생산된 농산물의 적정시장가격 또는 생산자 소득을 적절히 보장할 수 있는 가격임
- 문전(한계)가격(Threshold Price)
 - 수입농산물의 EC 시장 유통가격이라 할 수 있으며, 목표가격을 기초로 산정함
- 개입(수매)가격(Intervention Price)
 - 공공수매기관이 시장에 개입, 수매하는 가격이며, 생산자 수취하한가격임.

(2) 지지가격 결정절차

- 시장연도말(1~2월), EC 집행위는 당해년도의 품목별 목표가격, 개입가격 및 생산목표량(가격보장 최대한도 설정)에 대한 집행위(안)을 마련
 - 상주대표부대표, 집행위원회, 113위원회 등의 의견 조정을 거쳐 농업이사회에 제출
 - 이사회에 제출되면, 이사회장은 1)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의 및 2) 각 회원국 각료들간의 의견 조정후 농산물가격을 확정함(법규형식). 다만, 세출 예산한도증액 필요시에는 재무·농업 연석이사회 개최
- * 동 가격 결정시한 : 3월말(낙농 및 축산분야의 시장년도

개시일 - 4.1)

(3) 시장개입 형태

- 개입 또는 수매(Intervention)
 - 의무수매(A Intervention-연중 농민출하량 전량을 매입)
및 특별수매(B Intervention-시장가격하락이 예상될 때
대량매입)로 구분
- 보관보조금(Storage Premium) 또는 연도 이월보조금
(Carryover Payments) 지급
 - 수매기관의 보관능력 초과시 또는 당해년도의 예산 부족
으로 수매 불가능시 지급
- 생산장려보조금
 - 특수품목(예 : Durum 총 소맥)의 생산장려 또는 특정품목
주산지의 생산을 보호함에 목적
- 생산환불금
 - EC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의 국제경쟁력
확보함에 목적이 있음. 예로서 전분생산공장에 대해 전분의
국제가격과 EC내 생산가격과의 차액을 환불

다. 대외보호제도

(1) 가변부과금(Variable Levies)

- 가변부과금은 문전(한계)가격(Threshold Price)과 수입가격
(CIF)의 차액
- 품목별 가변부과금의 단위당 부과액은 매일 EC 집행위가
고시함.(다만, 가공품에 대하여는 월 1회 고시)

(2) 수출환불(보조)금(Export Refu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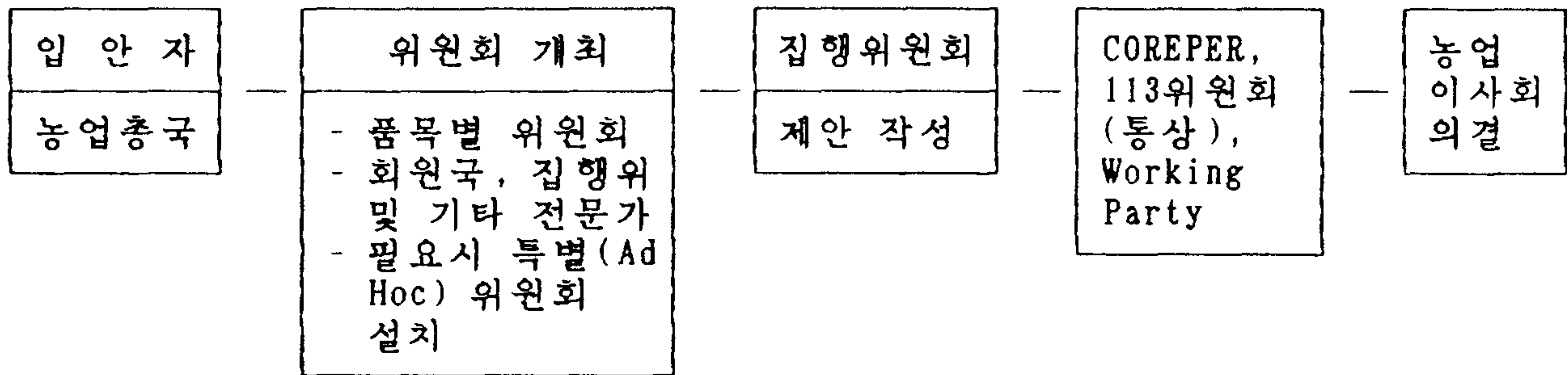
- EC 시장가격과 세계시장가격의 차액을 수출업자에게 환불

(3) 수출 허가제

- 수출보조금의 운용을 위한 수출가격, 지급대상 여부를 검토함에 목적이 있음.

3. CAP 운용실제

가. 정책결정 과정



- 회원국 정부는 집행위 입안과정(각종 위원회) 및 COREPER 회의를 통해 자국의견을 반영하고, 회원국간의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지며, 집행위원회 및 농업이사회는 회원국간의 실질협상 결과를 수락
- 집행위원회의 최종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회원국 의견 반영

나. EC 집행위 농업담당 조직 개요

- 집행위원(Rene STEICHEN - 룩셈부르크)
- 농업총국 총국장(Guy LEGRAS - 불란서)
 - Director General, Directorate - General VI(DG VI)
- 부총국장(Deputy Director General) : 4명

- 1) Fernando MANSITO CABALLERO(스페인)
 - 구주의회 및 ESC 담당국(Directorate A-5과)
 - 농업법제국(Directorate B.I-4과)
 - 품질 및 검역국(Directorate B.II-3과) : Lars Christian HOELGAARD

- 2) David ROBERTS(영국)
 - 농작물국 (Directorate C-5과)
 - 축산물국 (Directorate D-3과)
 - 특작국 (Directorate E-4과)

- 3) Franco MILANO(이태리)
 - 농촌개발 1국(Directorate F.I-3과)
 - 농촌개발 2국(Directorate F.II-3과)
 - EAGGF 담당국(Directorate G-5과)

- 4) Rolf MOHLER (독일)
 - 농업통상국(Directorate H-3과)
 - ※ 갓트담당과 : Mary MINCH(아일랜드)
 - ※ 양자협상담당과 : John MADDISON(영국)

다. CAP 업무영역

- 1) EC의 농업정책은 EC 집행위와 EC 회원국 정부로 이원화되어 있음.
 즉 Rome(EEC) 조약에 의거 EC 회원국이 공동으로 추진키로 한 분야에 대하여는 EC 집행위가 담당(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하고, 동 조약에서 제외된 분야 또는 예산상 공동집행이 보류된 분야에 대하여는 회원국 정부가 시행함.

2) EC 집행위 소관분야(별첨 EC 공동농업정책 개요 참조)

- 공동가격정책 : 개입가격제, 공동가격운용, 유럽농업지도 보증기금
운용등 가격조절을 통한 수급조정 시책
- 공동생산 조정정책 : 생산장려금지급(특수품목), 품종 및 기술개발
지원, 휴경보상제, 생산쿼타제등
- 공동통상정책 : 공동관세, 공동수출입 제한, 가변부과금(variable
Levies), 수출보조금 운용등
- 공동품질 규격설정 및 규제
- 공동 동식물 검역제도 운용
- 저개발지역등 특수지역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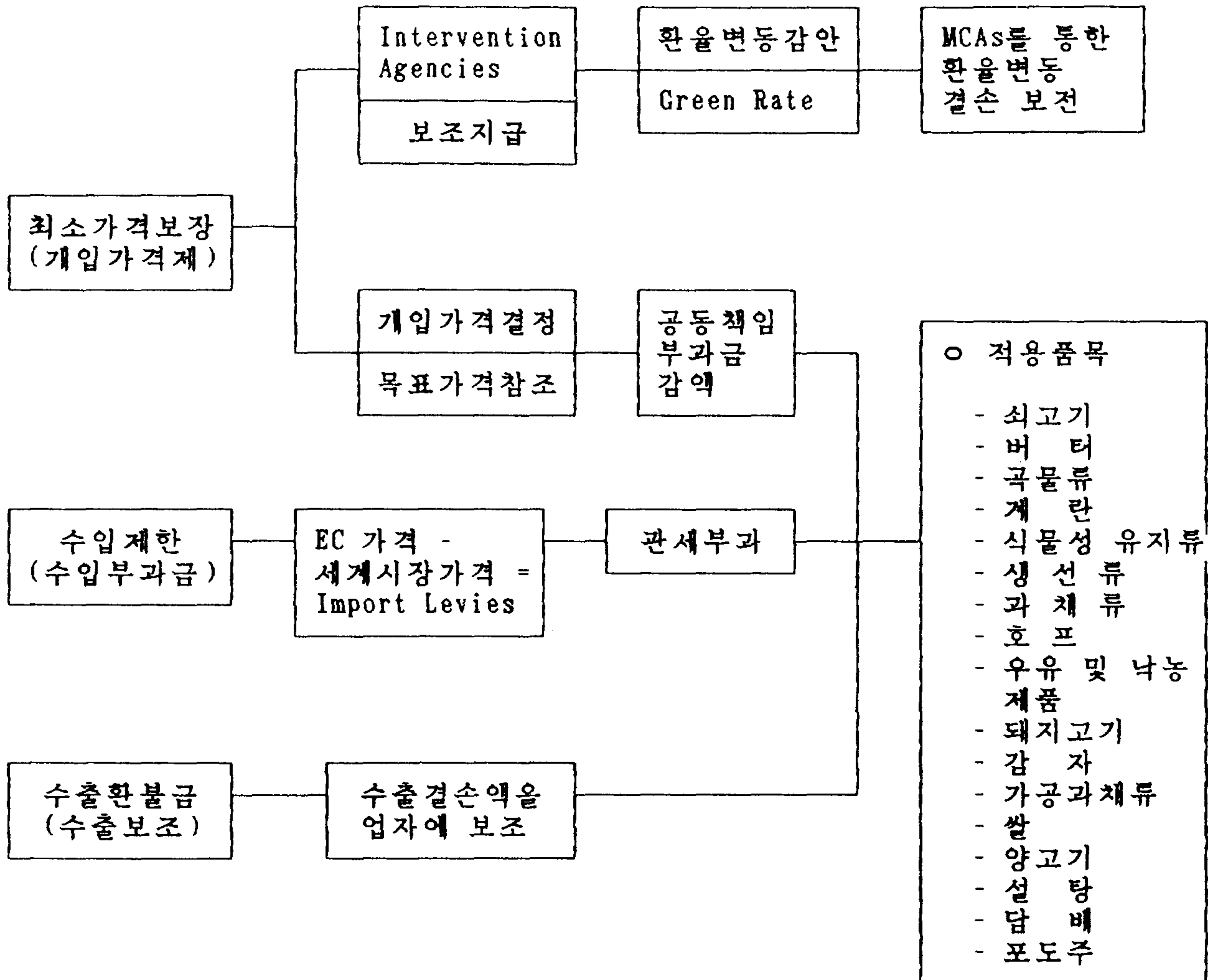
3) EC 회원국정부 소관

- 공동농업정책의 집행 : 할당된 시장개입 물량의 구매 및 가격보조금
운용, 관세 및 가변부과금 집행등
- 공동농업정책이외 분야
 - 농업생산기반 조성등 농업구조 개선사업
 - 농지소유·임대차 제도
 - 농업 및 농민금융 지원
 - 농산물가공 및 유통분야
 - 농촌지역 개발사업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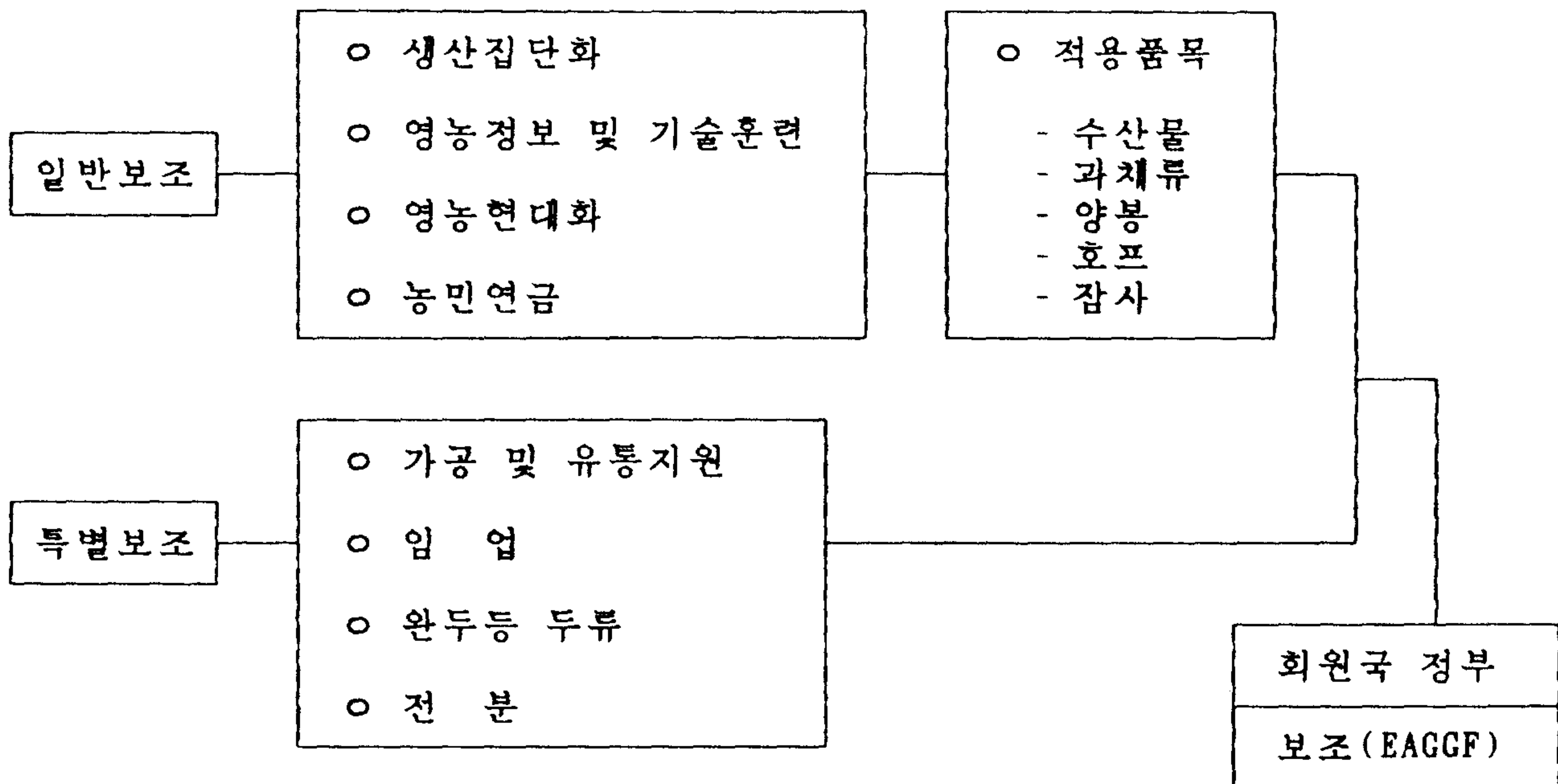
※ 다만, 각 회원국이 공동농업정책이외 분야에 대한 정책입안·시행시에도 CAP 방향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집행함.

라. 제도별 적용형태

1) 가격지지 (Price Support)



2) 생산보조(Production Support)



3) 품질표준화

화훼구근류, 계란, 배합사료, 비료, 식물성유류, 과채류, 벌꿀, 호프, 육류, 농약, 가금육, 종자류, 포도주

4. EC 농업의 문제점

가. 서론

- (1) CAP 시행후 EC 농업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 특히 식량의 안정적 공급, 역외농업이 EC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 EC 농업생산 기반을 확보한다는 CAP의 기본이념은 달성하였음.
- (2) CAP 시행후 연대별 EC 농업상황을 개괄하면
 - 60년대 : 50년대 이전의 만성적인 식량부족현상은 점감
 - 70년대 : 주요식량의 자급달성 또는 일부품목은 순수출 상태로 전환

○ 80년대 :

- EC 주종 농산물의 대부분이 생산은 과잉상태인 한편, 동시에 소비증가 추세 둔화 또는 감소로 농산물 재고는 계속 증가
- 농업부문예산 증가와 소비자들의 고농산물 가격에 대한 대한 반발 및 식품품질의 고급화 요구 증대

(3) 한편, 80년대에 세계 농산물 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EC는 가변 부과금, 수출보조금 등 제도적 장치에 힘입어 세계의 농산물 시장 점유율을 크게 증대시킴으로서 농산물 무역의 마찰발생

나. 대내적인 문제

- (1) EC 주종 농산물 생산과잉, 소비추세 둔화로 재고누적상태
 - 주요농산물 자급도 : 곡물(120%), 쇠고기(108), 분유(145)등
- (2) 농산물 생산과잉 및 재고누적으로 인해 농업세입재원 감소 (가변부과금, 관세 등), 반면 농업지출은 증가(시장개입비용, 수출보조금) → 결과적으로 EC 재정에 압박요인 → EC 집행위 내부에서도 농업보호 비용을 감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
- (3) EC 농업구조는 대.소농이 혼합되어 있어, 가격지지정책만으로는 대.소농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농업경쟁력 확보와 영세농 보호 정책을 조화있게 추진하여야 한다는 요구 증대
 - 87년의 경우, 50ha 이상 대농은 전체농가의 6.8%에 불과 하나, 전체 경지면적의 48.6%를 점유
- (4) 생산과잉 및 재고누적의 결과, 주요품목의 수매가격인하 및 시장 가격의 하락으로 농업소득은 감소 : '92 실질농업소득은 전년대비 3.5% 감소
- (5) 소비자 단체들의 농업보호완화, 농산물 가격인하, 무공해식품 등 품질향상 및 농업에 의한 환경훼손 방지요구 증대

(6) 스페인, 폴루갈, 동독지역등 농업기반 취약지역의 CAP 적용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다. 대외적인 문제

(1) EC의 과잉재고 처분을 위한 수출보조금 지급액증가, 그 결과
EC의 세계 농산물 시장점유율이 증가됨에 따라, 미국, 호주,
알젠티나, 캐나다 등 농산물 수출국과의 마찰증대

○ 수출보조금 증가추이

- 5,695백만 ECU('80) → 6,993('85) → 9,348('92)

(2) GATT등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EC 입지 약화

○ GATT/UR 농산물 협상

- 86년 하반기 UR 협상 시작이래 EC/CAP의 가격보조금,
가변부과금, 수출보조금은 미국, 케언즈그룹 뿐 아니라
수입국들로 부터도 비난의 대상

- 동 협상방향에 대해 EC 회원국간에도 이견이 있을 뿐
아니라, EC 집행위 타부서 및 소비자 또는 타산업분야의
단체들은 동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서는 EC/CAP의
개혁을 요구

○ 미·EC간 농산물 무역마찰

- EC의 미국산 호르몬처리 쇠고기 수입금지과 미측의 보복관세
- Oilseeds 보조금 관련한 미·EC간 무역마찰
- 미국의 수출육도축장 위생기준 문제
- Corn Gluten Feed 수입기준등

5. '92 EC 농업정책관련 주요동향

CAP 개혁

가. '88 개혁과 평가

1) 80년대초 세계적인 곡물재고증가 및 가격하락 현상이 발생되었으며, EC의 경우도 낙농제품, 육류 및 소맥등의 재고증가로 EC 재정 압박 요인이 발생, CAP의 부분적인 보완이 아닌 근본적인 개혁필요성이 대두됨. 이에따라 85년초 EC 집행위는 EC 농산물 시장의 균형을 회복하고, 재정부담을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한 제1차 CAP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88.2월 회원국간에 아래와 같이 합의함.

2) 내 용

- 합의 내용 골자는 농업지출억제와 과잉생산품목의 생산조절을 실시하는 것임.
- 농업지출 한도억제
 - 가격보장 한도량(Maximum Quarantee Quantities) 설정
 - . Cereals, Oilseeds 및 기타 두류 : Cereals-160백만M/T
 - EAGGF 중 가격보장부문의 증가율 한도설정
 - . 연증가율은 EC/GNP 성장율의 74% 이내로 제한
 - 가격보장 한도량 이상 생산될 경우 추가로 공동책임부과금을 부과(3%)하며, 차기년도의 지지가격도 인하
- 생산조정
 - 우유의 생산쿼타제
 - 농지휴경화계획(Set-Aside), 농지의 조방이용(Extensification), 생산과잉 품목의 작목 전환시 소득보조 지급
 - 은퇴 농민의 조기연금 지급과 방기농지의 관리

3) 평 가

- 농업지출 한도억제 즉, MGQ 및 가격보장부문의 지출증가율 한도설정은 CAP 시행결과로 나타난 생산과잉 및 재정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며, CAP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책으로서는 미흡
- 88-89 기간중 EC 농산물 시장의 일시적 균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소련등의 생산감소로 인한 세계 농산물 시장 여건 변화에 기인하였으며, '90 이후 과잉생산에 따른 재고(Cereals, 쇠고기, 버터, 분유 등)와 농업지출 증가현상이 재현됨.
- 생산억제 즉, 휴경화, 조방화 및 농민조기연금제의 소기 효과 거양에 실패

나. '92 CAP 개혁

1) 추진경위

- 90.10. Delors 위원장 및 Mac Sharry 농업담당 집행위원은 GATT/UR 농산물 협상에 제출할 Offer안 토의 과정에서 연내에 CAP 개혁안 제출을 공약함.
- 91. 2. CAP 개혁추진 배경 및 기본방향을 농업이사회에 회부함.
- 91. 7. EC 집행위의 CAP 개혁안을 농업이사회에 제출함.
- 92.1-5. 농업이사회 의장이 5차에 걸쳐 집행위와 회원국간, 회원국간의 의견조정을 위한 Compromise Paper를 제시한 결과, 5.21. 개혁방안에 합의함.

2) 개혁 합의내용 (요약)

- 금번 CAP 개혁의 주요지는 과잉생산으로 말미암아 내부적으로 재정 부담 요인이 되고, 무역분쟁의 원인이 되어 온 소맥 등 cereals, 낙농제품 및 쇠고기분야에 있어, 지지가격을 대폭 인하하고, 직접 소득보조제도를 도입하여 국제가격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임.

Arable Crops(Cereals, Oilseeds, Protein Crops)

가) Cereals

- 현행 CAP의 기본제도 즉 가격지지, 가변 부과금 등은 유지 하되, '88 개혁시 도입하여 시행되어온 공동책임 부과금 (Co-Responsibility Levy) 등은 폐지함.
- 향후 3년간 Cereals의 가격체계 개혁 및 가격인하에 따른 소득손실보상액(Compensatory Payments)은 아래와 같이함.

	한계가격 (Threshold Price)	목표가격 (Target Price)	개입가격 (Intervention Price)	ha당 소득보조
'91/'92	208 ECU/t	212	168	-
'93/'94	170	130	117	25
'94/'95	160	120	108	35
'95/'96	155	110	100	45

- 가변부과금의 부과기준이되는 Community Preference 즉, 한계가격과 목표가격과의 차이는 45ECU/t가 되도록 함.
- 휴경보상제(Set-Aside) 시행 강화
 - 경작지의 15% 이상을 휴경하는 농가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영세농의 경우에는 15% 의무휴경과 관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함.

- 휴경보상제는 Cereals, Oilseeds 및 Protein Crops 분야에 시행함.
- 휴경보상금 산정을 위한 지역별 평균수확량등 결정방법은 별도 마련함.
- 쌀에 대하여는 특별보완 요소를 고려하고, Durum종 소맥에 대한 기존 특별보조(300ECU/ha)는 계속 시행함.

나) Oilseeds(대두, 유채, 해바라기씨등)

- '93년도부터 개입가격제, 공동책임부과금, 최대가격 보장 한도량등은 폐지하고, 생산자에 대한 직접소득 보조(ha당)를 도입함.(미. EC간의 Oilseeds 갯트패널 결과에 따라, '91.10. 이미, 보조제도 개편을 위한 규정을 채택한 바 있음)
- 휴경시 보상금을 지급하며, 그 방법은 Cereals 분야와 같이함.
- 보조액산정을 위해 세계시장가격을 참조가격(Reference Price)으로 사용하고, Cereals 가격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ha당 보조액을 설정함.
- 보조는 2단계로 구분하여 지급함. 즉, 경작계약 체결시 1단계로 보조를 선급하며, 세계시장가격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연도말에 차액을 보완지급함.

다) Protein Crops (Peas, Beans, Lupins, Dried Fodder등)

- '93년도부터 개입가격제등은 폐지하고, ha당 소득보조제를 도입함. 다만, Lentils등 일부 품목은 '95/'96년이후부터 실시함.
- Peas, Beans, Lupins의 경우 ha당 보조금은 65EUC이며, Oilseeds와 동등한 방법으로 지급함.

- Dried Fodder의 경우에는 ha당 소득보조액의 점진적인 인하 방안을 강구함.

라) Sugar

- Cereals 분야의 개혁시행결과와 현행제도가 만료되는 시기인 93년도말에 시장제도 개편문제를 재검토하되, 특히 ACP 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함.

Tobacco

- 현재 생산되고 있는 34개품종을 8개(3개의 그리스 고유품종 포함)로 축소하고, 각 품종별로 단일 Premium제를 도입하며, 시장개입 또는 수출보조제도는 폐지함.
- 회원국별, 품종별 생산쿼타제를 도입하고, 생산쿼타량을 94년까지 350천M/T으로 감축함('93: 370천M/T).
쿼타량이상 생산량에 대하여는 Premiums을 지급치 아니함.
- Premium 지급 및 생산쿼타의 통제와 감독을 위한 Control Agency를 설립함.
- Tar 함량이 낮은 담배개발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고급품질의 입담배 생산장려를 위한 재정지원을 실시함.

우유 및 낙농제품

가) 우유생산쿼타 감축

- '92년도 만료되는 생산쿼타제는 연장시행하되, 쿼타 감축 문제는 93.3월말까지 EC 집행위가 우유시장 여건을 분석한 자료를 기초로하여 재검토함.
- 다만, 스페인(500천M/T), 그리스(100천M/T)에 대하여는 93년부터 생산쿼타량을 증량함.

- 생산쿼타 감축결정시, 쿼타감축에 따른 소득보상제도입을 검토함.

나) 낙농제품(버터, 치즈, 분유)

- 버터개입가격을 '93/'94 및 '94/'95 각각 2.5%씩 인하하고, 탈지분유가격은 현행수준을 유지하되 매년 낙농제품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위의 결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당초 집행위안에 포함되어 있던 우유 Premium은 지급하지 않음.

쇠고기 및 양고기

가) 쇠고기(Beef)

- 개입가격은 '93/'94부터 3년동안 15% 인하함.
- Premium 지급
 - ha당 일정두수에 대하여 premium을 지급하며, premium액은
 - 1) 숫소의 경우 두당 90ECU씩 2회지급, 2) 암소의 경우 두당 120ECU를 지급함.
 - premium 지급대상은 ha당 '93: 3.5두, '94: 3.0두, '95: 2.5두, '96이후는 2두에 한함.
 - ha당 1.4두이내로 입식두수를 제한하는 농가에 대하여 Extensification Premium을 지급(두당 30ECU)함.
- 쇠고기의 시장개입 한도량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고, 어느 회원국의 쇠고기 시장가격이 개입가격의 60% 이하로 하락될 경우 특별조치(Safety-Net)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93: 750, '94: 650, '95: 550, '96: 400, '97: 350천M/T

나) 양고기(Sheep Meat)

- 농가당 사육두수를 제한하기 위한 Premium제를 실시함.
즉, 산악지등 저개발지역은 농가당 사육두수를 1000두로 제한하고, 기타 지역은 500두까지 Premium을 지급하며, 동제한두수 초과시 초과두수에 대하여는 Premium의 50%만 지급함.
- Premium 산정기준년도는 '89, '90 또는 '91년도중 회원국이 선택할 수 있으며, Premium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일정 조건하에 양도할 수 있음.
- 올리브유, 과채류, 포도주등 금번 개혁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품목의 개혁여부는 추후 검토함.

CAP 개혁에 따른 부수조치

가) 환경보전 조치에 대한 보조지급

- 수질보전, 경작지를 목초지로 전환하는 경우, 유기농법 즉 비료, 농약, 제초제의 감량사용하는 경우, ha당 가축 입식두수를 제한하는 경우, 산림관리에 관한 시범지 운영 등을 위한 보조지급 또는 자금을 지원함.

나) 경작지의 산림복구(Afforestation) 지원

- 임산물 자급도를 제고하고, 환경보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경지로 이용하는 경우와 산림화하는 경우의 소득차액을 보전해줌.
- 소득보조액은 연간 ha당 600ECU씩, 최대 20년간 지급가능함 다만, 침엽수의 경우에는 최대 보조수혜 가능한도는 ha당 3000ECU로 함.

다) 조기 은퇴농민 연금제

- 일반연금대상자가 아닌 55세이상 전업농을 대상으로 하여, 연간 최소 소득보장액 4000ECU와 ha기준으로 지급되는 250ECU를 합산하여 연간 10000ECU 이내의 연금을 지급함. 다만, 각 회원국정부는 상기 지급한도액에 별도로 추가 연금지급은 가능함.
- EAGGA에서 조기은퇴 연금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조하며, 지역여건에 따라 75% 또는 50%까지 지원함.

미, EC간 농산물 UR 협상관련 협상 결과

가. '92.11.20 EC와 미국은 '91.12. Dunkel Text 제시 이후 계속되어온 농산물 무역 및 갓트/UR 협상과 관련한 제반 무역분쟁의 종식에 합의함.

나. 미, EC 협상결과

1) 갓트/UR 협상분야

- Dunkel Text를 기초로 전협상분야를 포괄한 균형된 결과 (Comprehensive, Global and Balanced Package)를 도출하기 위해 UR 협상을 조속히 재개함.
- 문헌 G-7 정상회담이 천명한 바대로 금년말까지 UR 협상을 종결하기 위해 협상참여국들의 Flexibility를 기대함.
- 농산물협상
 - 국내보조, 수출보조, 시장접근분야에 있어서 양측의 견해차이를 해소하였으며, 양측은 농산물 보조감축 및 관세인하계획을 조속히 갓트에 제출키로 함.

- 국내보조분야
 - '86-'88 보조수준을 기준하여, AMS(Aggregate Measure of Support) 방식에 따라 20% 감축함.
 - 생산감축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직접소득보조는 감축대상에서 제외함. 따라서 EC/CAP 개혁시행과 관련한 직접소득 보조(휴경보상, 가격인하에 따른 소득보상)는 감축대상에서 항구적으로 제외함.
- 수출보조분야
 - 보조수출물량은 '86-'90 평균대비 21%(Dunkel Text-24%), 수출보조액은 36% 감축함.
- 시장접근분야
 - 관세인하 계획을 조속히 갓트에 제출키로 함.
- Rebalancing
 - EC는 Rebalancing 요구를 철회하되, 곡물수요 대체품목(예, Corn Gluten Feed등)의 EC내 수입급증으로 인해 CAP 개혁이행에 위협이 될 경우, 양측이 협의하여 해결키로 합의함.
- Peace Clause
 - 미측은 감축이행기간(6년)중 국내 및 수출보조가 감축공약 또는 기타 기준에 따라 이행될 경우, 갓트 패널제소등 조치를 자제한다는데 동의함. 다만, 수출보조가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상계관세는 적용할 수 있음.
- 시장접근협상
 - 실질적이고 균형된 Package를 도출하기 위해 분야 또는 품목별로 구체협상을 계속함.

- 고관세율의 상당한 인하, 저관세 수준으로의 조화, 주요분야의 관세 철폐등 가급적 예외없이 최대한의 관세인하를 달성함.
- 관세협상에는 개도국 및 여타 선진국들이 공히 참여해야 하며, 양측은 최대한의 양허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공동노력을 경주함.
- 정부조달분야에 있어서 정부조달 협정 적용범위의 확대등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양측은 적용범위 확대의 구체화 및 협정내용의 개선을 위해 노력키로 함.

○ 서비스협상

- 서비스시장접근 계획(offers)이 동 협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 이라는데 합의하고,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함.
- 양측의 Offers를 좀더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의를 가진 바, 시장개방은 최대화하고, 예외는 최소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다른 협상 참여국들의 Offers도 개선되기를 희망함.

2) Oilseeds등 기타 농산물분야

○ EC의 Oilseeds 감산문제

- EC의 Oilseeds 생산면적은 5.128백만 ha(현 재배면적 5.5백만톤 수준)이내로 제한하며, 시행첫해의 생산면적은 현행대비 15% 이상 휴경(Set-Aside)토록 하고, 그 이후에는 최소한 10% 이상 휴경 키로 함.
- EC의 생산면적이 목표면적을 초과할 경우, Oilseeds 재배 전체 면적에 대한 보조금을 감축하며, 동 합의내용을 위반할 경우에 EC는 구속력 있는 중재를 수락하여야 함.
- 미국은 EC가 휴경농지에 자동차 유류등 비식용 목적의 Oilseeds 생산을 허용한다는데 동의하였음.

○ 기 타

- 양측의 현안사항인 Corn Gluten Feed 및 Malted Barley Sprouts에 대한 이견을 해결함.
- EC는 폴루갈의 미국산 옥수수 50만톤 수입을 허용하고, 관세율을 인하 적용키로 함.
- EC는 '93년도에 스페인이 미국산 옥수수 200만톤과 수수 30만톤을 수입토록 허용하고, 이에대한 수입부과금도 인하키로 합의함.

6. 최근의 갓트/UR 농산물 협상 동향

가. UR 협상 추진경과

- 1986.9 : 우루과이라운드 Punta del Este 각료선언
 - 1986년 9월 우루과이 Punta del Este에서 갓트(GATT) 각료회의 개최
 - 협상의 목표 및 기본원칙 설정
- 1988.12 : 몬트리올 중간평가회의
 - 미국과 EC의 참여한 대립으로 중간평가 합의 실패(농산물, 서비스, 시장접근, Safeguard등)
- 1989.4 : 제네바 중간평가회의(4개 미결분야 기본방침 합의)
 - 농업보조 및 보호수준을 점진적으로 상대방 감축키로 합의
 - 식량안보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과 개도국우대를 고려키로 합의
- 1990.7 : 농산물협상그룹 의장초안 제시
 - 드쥬 농산물그룹 의장은 「협상의 기초」 문서로 의장초안 제시

- 1990.12 : 브뤼셀 각료회의 결렬
 - 협상종결을 위해 각료회의가 개최되었으나 농산물분야에서 미·EC간의 입장대립으로 협상타결 실패
- 1991.2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공식재개
 - 무역협상위원회(TNC) 개최, 던켈 가트사무총장의 향후 협상계획 제시
- 1991.6-7 : 농산물협상 진행대안서(Options Paper) 제시
- 1991.12.20 : 농산물협정 초안(Draft Final Act) 제시
 - 미국·EC간 입장대립 등으로 합의도출이 이루어 지지 않음에 따라 던켈 사무총장은 자신의 직권으로 협정초안 제시
- 1992.1. 던켈/협정초안에 대한 미·EC간의 이견
 - '92.2-11 미·EC간의 양자협상 추진
- 1992.11.20 : 미·EC간 농산물등 UR 협상 추진방침 합의(12월초 서명)

나. 던켈 사무총장의 농산물 협정초안(요지)

- 기본방침
 - 협정적용 대상품목 : 모든 농산물(가공품은 포함하되 수산물, 임산물 제외)
 - 농업위원회를 설치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분쟁해결은 GATT의 일반규정을 적용
 - 이행기간후 추가적인 감축문제는 이행종료 1년전 협상을 통하여 결정
- 시장개방분야
 - 자유화 품목은 관세인하를 통하여, 수입규제 품목은 관세화(Tariffication)에 의한 관세상당치 감축을 통하여 자유화 확대
 - 관세상당치 감축 : 7년간(1993-1999년) 평균 36% 감축(품목별로는 최소한 15%)

- 최소시장접근(Minimum Market Access) 보장 : 기준기간(1986-1988년) 동안의 수입량이 국내소비량의 3% 미만인 경우 이행초기연도(1993년)에 3% 수준을 보장하고 이행종료연도(1999년)까지는 5%까지 확대
 - 관세인하 : 양허품목인 경우 양허세율을 기준, 비양허품목일 경우 1986.9.1 현재 실행관세를 기준하여 7년간(1993-1999년) 평균 36% 감축(품목별로 최소한 15%)
- 국내보조
- 기본원칙 : 허용대상 보조를 제외한 모든 국내 보조를 감축(허용대상 정책의 예시)
 - 일반서비스,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재고, 국내식량원조, 생산과 무관한 직접소득보조, 소득안정지원, 재해구호, 탈농지원, 휴경보상, 투자지원, 환경보전지원, 낙후지역 원조
 - 허용기준 : 정부재원에 의한 지원일것, 가격 지지효과가 없을 것
 - 감축대상정책과 감축방법
 - 감축대상 : 시장가격지지, 소득보조, 생산요소보조
 - 감축방법 : 1986-1988년 기준으로 보조액을 계산, 7년간(1993-1999년) 20% 감축
- 수출보조
- 기본원칙 : 합의된 수준 이상의 수출보조 금지(감축대상)
 - 정부의 직접보조, 공공재고의 저가수출, 가공품에 포함된 원료 농산물의 수출보조, 운송비보조, 유통비용 보조등
 - 감축방법 : 1986-1990년평균 수출보조재정액은 36%, 보조에 의해 수출물량은 24%를 7년간(1993-1999년) 각각 감축
- 개도국 우대
- 감축률 : 각 분야별 선진국의 2/3 수준
 - 이행기간 : 3년간 연장 허용(10년)

다. 미. EC 양자협상 결과(IV-5참조)

- 보조감축 및 관세인하 계획의 제출
- AMS 방식에 의거 국내보조 20% 감축, 직접소득보조는 Green Box 대상
- 보조수출물량은 '86-'90 평균대비 21% 감축
- Rebalancing 및 Peace Clause 합의

라. 추진동향과 전망

1) 미. EC 협상타결이후 동향

- '92.11 미. EC간의 Blair House Agreement의 체결로 미. EC 농산물 무역분쟁은 일단 마무리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UR 협상도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음. 그러나 그 이후 잇달은 미국과 EC의 정치적 일정으로 말미암아 UR 협상 뿐 아니라, 미. EC간의 후속 협상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 못함.
 - 미대통령선거, EC 집행위원 교체 및 단일시장 출범, 미행정부 교체, 불란서 총선과 행정부의 교체등
- 한편, 미. EC 양자협상 타결이후 UR 협상 및 미. EC간 협상의 초점은 Market Access(공산품 고관세 인하등) 및 서비스(통신, 공공시장) 분야에 모아지고 있으며, 금년들어 양측은 2-3차례 회합을 가진 바 있으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임.
- 미국의 동향 및 내부분제
 - 미행정부는 '93.3월초 만료된 Fast Track Authority 기간연장('93.12.15일) 제안을 상원에 제출키로 결정 발표(4.9)한 바 있으나,
 - Clinton 행정부는 USTR 인적구성의 지연등 협상체제의 준비가 미완료되었을 뿐 아니라, 동 행정부의 확고한 대외통상정책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됨.

- Clinton 행정부는 통상정책의 중점을 쌍무협상 체제(미상원의 301조 강화움직임, 미·EC간 공공시장개방 협상 관련한 보복 조치 발표등)에 두려는 것인지 또는 다자협상(FTA 연장, 미·EC간 Market Access 협상등)으로 갈 것인지가 불분명,
- 농업단체를 포함한 경제단체들의 요구를 적절히 조정하는데에도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미·EC 농산물 협상결과의 재협상 여부, 미·EC 관세 및 공공시장 개방협상시 확고한 방침결여등)
- 미행정부는 또한 NAFTA 마무리, 제정 및 무역적자 감축등 현안 대내외정책 처리가 시급한 과제임.
- EC의 동향과 내부문제
 - EC는 집행위원을 교체하는등 조직정비를 완료하고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UR 협상타결에 두고 있음.
 - 영국, 독일은 특히 UR 협상타결에 적극적이거나, 불란서는 전사회당 정부 뿐 아니라 현 중도우파정부도 UR 농산물협상, 미·EC 농산물 협상결과에 강경히 반대(veto권 행사, 재협상 요구등)하고 있어, 회원국간의 의견조정이 필요함.
 - 또한 불란서 신행정부의 CAP 개혁등 농업문제에 대한 입장설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각 회원국 공히 CAP 개혁, UR 농산물 협상결과에 대한 농민단체들의 반발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 되어야 함.
 - 미국과 EC가 위와같은 상황에 있고, 미·EC가 적극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UR 협상을 주도할 만한 국가가 없을 뿐 아니라, Dunkel 갓트사무총장의 퇴임이 확정되어 갓트로서도 UR 협상을 주도할 입장이 아님.

- 결과적으로 여타 협상 참여국들은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방향 및 미·EC간의 Market Access 협상등 결과를 주목하고 있음.

2) 전 망

○ 미·EC 양자협상 전망

- EC의 UR 협상 추진의 걸림돌인 불란서의 경우, 신행정부의 농업문제에 대한 입장이 '93.3. 총선시 표방하던 태도보다 상당히 완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CAP 개혁 및 미·EC 농산물 협상 결과에 대한 농민반발을 재정적 보전으로 무마하려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에는 FTA 연장신청 및 상원토의과정을 전후하여 대외통상정책 방향이 밝혀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미국의 FTA 연장이 확정된 이후 미국과 EC는 UR 협상의 Market Access, 서비스분야에 대한 양자협상이 추진될 전망 (5월말 또는 6월)

○ 갓트/UR 협상

- 제네바에서의 UR 협상회의는 갓트 사무총장의 경질이 확정된 후, 미·EC의 양자협상과 병행 또는 동 양자협상이 마무리된 후에 그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7월이후)
- 한편, 7년이상을 끌어온 UR 협상은 금년 하반기중 본격적인 마무리협상이 전개되어 미국의 FTA 만료시점인 12월 중순경까지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관망되고 있음.

V. 한·EC 농업협력현안

1. GATT/UR 농산물 협상에서의 아국입장에 대한 EC측 지원 요망

- 쌀등 기초식량품목의 관세화 예외반영 문제에 대해,
 - 관세화 예외인정에 반대한다는 것이 EC의 기본입장이나
 - 미국등 주요협상국들이 아국의 쌀에 대한 관세화 예외에 동의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 아국의 개도국 우대 적용요청에 대하여는 반대의사 표명

2. BOP 수입자유화 계획과 관련한 EC측 관심품목을 수입자유화 계획에 반영

- '92-'94 수입자유화 계획에서 제외된 육류조제품, 냉동돼지고기, 우유 및 낙농제품, 오렌지, 사과 및 과일쥬스등 EC 회원국 관심품목에 대한 추가 조기개방 및 쿼타수입 요청
- EC는 아국 및 일본등 아시아 국가들의 쇠고기, 치즈, 버터, 포도주등의 소비량 증가를 주시하고 있고, 낙농제품, 포도주 및 육류조제품의 경우, 경쟁력을 갖고 있어, 조만간 등 품목의 시장개방을 요구할 가능성 있음.
 - '94.1 갓트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제3차 농산물 수입자유화 계획 발표를 전후하여 압력가중 예상
 - 쇠고기의 경우, '85 호주와 체결한 협정으로 인해 아국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EC는 동 협정 폐기를 희망하고 있음.

3. 아국의 동·식물검역제도의 완화요청

가. 가축 위생(Verinary Sanitation Issue)

1) EC측 입장

- EC 회원국(프랑스, 벨기에, 이태리, 독일등)산 원피수입 제한 해제요청

-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요청
- 구제역병등 악성 가축전염병 비발생기간 명확화 및 완화요청
- EC 회원국별 수입제한을 지역별로 전환 요청

1) 아축 입장

- 원피는 구제역별 발생기간을 고려,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따라서, 회원국별 전염병(구제역병) 발생시기, 가축위생 실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선별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수 밖에 없음.
 - 프랑스산 원피는 수입기허용, 벨기에산 원피수입은 연내 긍정 검토 예정
 - 서독('88.1월 발생), 이태리('89.7월 발생)산 원피는 93년이후 검토 예정
- 쇠고기 수입은 가축방역 안전상 구제역병 소멸과 예방접종 중단후 2년이 경과되어야 수입가능 여부가 검토될 수 있음.
 - 프랑스의 구제역 예방접종 중단이 91.4임에 비추어 현재로서는 93.4이후에 수입 가능여부 검토 예정임.
- 가축방역제도 운영은 국제관례(OIE 규정등)를 준용하여 운영중임.
 - 해당국내의 방역체계와 주변국가의 방역실태등 가축위생 여건과 아국의 대처능력등을 종합, 검토
- EC 회원국의 가축방역 실태는 각기 상이하므로 방역상 EC 지역 전체를 동일 취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현단계는 국가별로 선별 검토
 - 국가마다 방역체계가 상이하므로 수입제한을 국가별이 아닌 발생지역 단위로 운용하는 것은 불가능함.

나. 화훼구근류 검역제(Quarantine System of Flowerbulbs)

1) EC측 입장

- 한국은 '89.7 격리재배 검사요령의 개정으로 구근류의 격리재배를 의무화하고 있는 바, 이는 화란의 화훼구근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 이의 시정을 요망

2) 아측 입장

- 한국은 화란산 뿐만 아니라 모든 화훼구근류에 대하여 격리재배 검역을 실시하고 있음.
 - 이것은 순수한 검역상의 목적임. 격리재배 검역이후에도 화훼구근류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음은 이 조치가 무역장벽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음.
-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화란 검역전문가간 여러차례의 대화를 통하여 양국간 견해차이가 많이 좁혀지고 있다고 생각함.
 - 화란측에서 보낸 화훼구근류에 대해 격리재배 시험후 시험결과가 한국측의 기준에 맞을 경우 격리재배 적용을 면제키로 합의
- 양측 전문가간의 합의에 따라 화란측이 보낸 구근류(튜립, 히야신스, 아이리스)에 대한 격리재배 시험결과 다량의 virus가 검출되어 아국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음.
 - 화란측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바, 양측 전문가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음.
 - 현재 화란측의 답신에 대해 아측 식물검역소 전문가들이 검토중에 있으며 화란측에 아측 의견을 공식 통보하겠음.

다. 그레이프후르트, 레몬 위생(Phytosanitary System on Citrus)

1) EC측 입장

- 스페인산 감귤류(그레이프 후르트, 레몬)의 수입 허용 요청
- 수입협의를 위한 한.스페인간 식물위생 쌍무협의 개최 희망
- ※ 당초 스페인측의 제기사항이었으나, EC측에선 EC산 모든 감귤류 수입 허용문제로 확대하라는 경향을 보임.

2) 아측 입장

- 스페인산 감귤류 수입 허용여부는 스페인측의 추가자료(91.10월 1차제시) 검토후 한.스페인 식물검역 전문가간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임.
- 관련자료 : Medfly(지중해 광대파리), 트랩등 발생상황, 방제조치 내역, Medfly 소독내용(예 : 저온처리)

4. 한. EC 동식물 검역전문가 회의

가. 한국과 EC는 89.12 및 '90.3에 식물검역 및 동물검역 Experts Meeting을 개최한 바 있음.

나. '92.11 한. EC 고위협의회시 EC측은 재차 검역전문가회의 개최를 요구하여, 아측은 이에 동의함.

다. 양측은 동 전문가회의 개최일정, 의제등을 검토중인 바, EC는 '93 상반기중 별도회의 또는 브뤼셀에서 개최예정인 Monitoring 회의시 Side Meeting 형식으로 개최를 희망하고 있음.

5. 양송이 통조림 대 EC 수출쿼타 운영

- '92 아국산 양송이 통조림의 대 EC 수출쿼타는 2670톤이나, 수출실적은 전무한 실정임.

6. 아국산 육류식품 및 가금육수출을 위한 Country List 교섭

- 제3국가가 EC로 축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는 검역규제를 위해 선별적으로 Country List에 등재토록 하고 있음.
- 현재 아국의 경우 동 List에 등재되어 있지 않음.